

제284회 시의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
I·SEOUL·U
너와 나의 서울

서울산업진흥원

정 관 변 경 보 고

2018. 12. 17.


Seoul Business Agency

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□ 개요

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

제55조의3(조례상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□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○ 변경 사유

- 관련법령 및 서울시 출연기관 표준정관 등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○ 변경 내용

-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<제14조>

- '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'에 근거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자 추가 (제1항 제8호 신설)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(개정 2018.3.29) 1~7. 생략 8. <신설> ②~③ 생략</p>	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(개정 2018.3.29) 1~7. 현행과 동일 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②~③ 현행과 동일</p>

관련 근거	<p>○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</p>
	<p>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 1. 공공기관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</p>

- 비상근 이사장의 직무수행 지원 강화 <제25조>

- 서울시 출연기관 표준정관,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반영하고, 비상근 이사장의 직무수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수행활동비 지급근거 마련 (제5항 신설)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5조(이사회회 소집) ①이사회회는 정기이사회회와 임시이사회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정기이사회회는 연2회 소집한다.</p> <p>③임시이사회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④이사장은 이사회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예산(안) 및 주요사업계획(안)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17></p> <p>⑤ <신설></p>	<p>제25조(이사회회 소집) ①이사회회는 정기이사회회와 임시이사회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정기이사회회는 연2회 소집한다.</p> <p>③임시이사회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④이사장은 이사회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예산(안) 및 주요사업계획(안)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17></p> <p><u>⑤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 이사회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</u></p>

관련 근거	<p>○ 서울시 출연기관 표준정관(안) (공기업담당관-2493, 2018.3.2)</p> <p>제25조(이사회회 소집) ①이사회회는 정기이사회회와 임시이사회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정기이사회회는 연 2회 소집한다.</p> <p>③임시이사회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④이사장은 이사회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</p> <p>⑤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</p>
	<p>○ 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 기준 지침 (행정안전부, 2017.12.27)</p> <p>가. 임원</p> <p>비상임 이사회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, 회의참석 수당 이외 이사회활동에 필요한 실비, 수당 등에 대해서는 자체경비 지급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가능</p>

참고 자료	<p>○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현황</p> <p>【투자기관】</p> <p>- 서울시 투자기관 이사회 운영개선계획('15.4월)에 따라 직무수당(월정액) 월 100만원 지급</p> <p>【출연기관】</p> <p>- 비상임 이사장을 둔 1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정관 및 관련내규에 따라 비상임 이사회 직무수당(월정액)을 지급 중이며, 12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매월 100만원으로 지급</p>
--------------	---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(안)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 2 장 임원 및 직원
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8.3.29>

1. 삭제 <2018.3.29>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8.3.29>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<개정 2018.3.29>
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6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018.3.29>
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②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행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 <개정 2018.3.29>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3.29>

제 4 장 이 사 회

제25조(이사회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소집한다.

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예산(안) 및 주요사업계획(안)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17>

⑤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8.3.29></p> <p>1~7. 생략</p> <p>8. <신설></p> <p>②~③ 생략</p>	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8.3.29></p> <p>1~7. 현행과 동일</p> <p><u>8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</u></p> <p>②~③ 현행과 동일</p>
<p>제25조(이사회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소집한다.</p> <p>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예산(안) 및 주요사업계획(안)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17></p> <p>⑤ <신설></p>	<p>제25조(이사회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소집한다.</p> <p>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예산(안) 및 주요사업계획(안)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6.17></p> <p><u>⑤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 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</u></p>